

미래인재양성센터 규정 (제명개정 2020.08.12.)

제정 2019. 8. 29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된 미래인재양성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08.12.)

제2조 (소재) 센터는 우리 대학교 인재개발처 내에 둔다.

제3조 (업무) 센터는 벤처정신을 지닌 전문직 인재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20.08.12.)

1. 국가고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
2. 공공기관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
3. <삭제 2020.08.12.>
4. <삭제 2020.08.12.>
5. <삭제 2020.08.12.>

제4조 (조직) ①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미래인재양성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(개정 2020.08.12.)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 내 국가고시반, 지역인재반을 개설하고 각 반 별로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0.08.12.)

④ 센터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.(신설 2020.08.12.)

제5조 (미래인재양성센터 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인재양성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0.08.12.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처장이 되고, 그 외의 위원은 유관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,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 대표 1인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0.08.12., 2020. 9. 8.)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회의는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취업팀장이 된다.

[제목변경 2020.08.12.]

제6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20.08.12.)

1. 센터 프로그램 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정
2. 센터 프로그램 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7조 (기타) 기타 센터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 (개정 2020.08.12.)

부 칙(2019. 8. 29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 벤처창업교육원규정 제14조에 따른 “벤처프런티어교육센터”는 폐지하되, “벤처프런티어교육센터”에서 운영한 “국가고시교육프로그램”은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0.08.12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미래인재개발센터규정은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0. 9. 8.)

①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